

消費地精製主義와

日本の 石油政策

다케모도 · 마사시

(日本石油連盟財務部次長)

I. 日本의 石油의 위치

1. 1차 에너지 供給의 構成

본론으로 들어가기전에, 日本의 石油産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日本에 있어서의 石油의 위치부터 설명하겠다. 먼저,



1차 에너지 供給에서 차지하는 石油의 비중부터 설명하겠다. 제1차 석유 위기까지는, 석유의 비중은 급격히 신장했지만, 1973년도 78%를 피크로, 그 이후 점차 감소, 1982년에는 62%로 축소되었다. 금후의 전망으로서는, 현재, 정부의 심의회에서 검토 중이지만, 잠정적인 試算에 의하면, 1990년도 및 1995년도에는 石油依存度가 50% 전후로 감소되고, 그 대신 原子力, LNG 등의 새로운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石油은 앞으로도 1차 에너지 공급의 중핵을 이룰 것으로 생각되지만, 소비량은 현재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추이될 전망이다.

2. 石油需給

다음으로 日本의 石油 수급 규모와 동향을 살

펴 보기로 하겠다. 소비량을 自由世界와 비교해 보면, 1982년의 자유 세계는 1인당 4,500만 배럴이고, 日本은 350만 배럴로, 8%에 해당된다. 韓國은 50만 배럴이라고 듣고 있는데, 日本은 韓國의 7배가 되는 셈이다.

日本의 石油 제품의 소비 동향을 보면, 제1차 석유 위기까지 해마다 크게 증

가했지만, 그 이후 증감을 되풀이 하다가, 제2차 석유 위기전인 1978년도를 피크로, 그 후로는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82년도의 경우, 연료유 소비량은 12~13년 전의 수준으로 감소 되고 있다. 이와같이 대폭으로 감소한 것은 原子力, 石炭, LNG 등으로 연료 전환한 것을 비롯해, 에너지 절약 경기의 둔화 등에 기인된 것이다.

또, 石油 소비량의 감소와 함께, 제품별 구성에서 상당한 변화를 나타내, 산업용 연료인 重油가 크게 감소한 반면, 灯油, 輕油 등의 中間溜分製品과 揮發油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輕·中質製品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5년 전인 1977년도의 경우, 重油의 비중은 43% 였으나, 5년후인 1987년도에는 28%까지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석유 제품 소비는 5년 후인 1987년에

는 1982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공급에 있어서도 원유 수입량이나 原油 처리량도 당연히 감소되어 오고 있으며, 이 때문에 상압 증류 설비의 가동율은 1982년도에 55%의 저율을 기록했다. 앞으로의 소비 동향으로 보아, 설비 과잉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9월말에 정부의 지도로 약 100만 배럴의 설비의 폐기 등의 축소를 단행하여, 현재 497만 배럴로 축소되었다. 그 결과, 5년 후에는 64~65%의 가동율로 약간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3. 石油精製·元売 등의 형태

다음으로 日本의 石油産業의 형태와 규모 등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다. 우선, 日本의 石油精製会社는 所要原油의 99%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기업수는 현재 29개 회사로 49개 정유공장을 갖고 있다. 1개 회사당의 정제 시설은 하루 17만 배럴이다. 日本의 정제 회사는 「元売」라고 불리는 판매 부문을 겸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그 元売会社에서 揮發油 판매를 하고 있는 곳은 13개 회사가 있다. 元売会社の 시장점유율은 최대의 회사가 18%로 점유율이 비교적 접근하고 있어서 경쟁이 극히 심한 형편이다. 日本의 석유 정제 회사, 元売会社는 모두 私企業이며, 국가의 자본은 일체 투자되고 있지 않다. 株主로서 특징적인 것은 美国, 英國의 메이저나 獨立系会社와 자본 제휴하고 있는 소위 외자계와 민족계의 회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제 능력, 시장 점유율은 양쪽 모두 현재 外資系 54%, 民族系 46%로 되어 있다.

또, 石油의 上流部門과 下流部門의 관계는 제 1차 석유 위기까지 나누어져 있었으나, 그 이후 부터 下流部門의 上流部門에의 진출이 별개 회사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原油 수입 가운데 日本의 개발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9% 정도로 미미하여, 精油業界는 개발 업체와는 별개의 산업을 형성하고 있어, 日本에서 石油 会社라고 부를 경우, 보통 精油会社와 元売 会社를 가리키고 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石油連盟도 이 精製·元

売会社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 회사의 단체는 별도로 있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石油製品의 판매 가격은 원칙적으로 自由 價格制이다. 즉 수급 관계등을 반영하여 시장에서 결정되는 방법으로 되어 있다. 다만, 석유 위기 때라든가,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 또는 하락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정부가 행정 지도 하거나, 石油業法에 따라 표준 가격을 설정하게끔 되어 있다. 따라서 日本의 석유 정제 원매업체는 石油業法에 의한 여러가지 제약이 있지만, 정부의 역할은 보완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石油 安定供給의 추진 방향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日本의 石油의 안정 공급에 대한 기본적인 추진 방향과 그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기본적인 추진 방향은 日本이 原油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석유 제품을 정제해 나가는, 소위 消費地 精製方式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품의 수입은 수급 조정상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나프타나 重油의 일부 품目に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石油業法에 의한 운용이나 제품 수입에 원유 보다 높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 하거나, 관세 할당 제도를 설정하기도 한다. 또, 제품 수출은 사전에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II. 消費地 精製方式 도입의 경위

1.2 차 대전후의 消費地 精製方式 도입

日本에 消費地 精製方式이 도입된 것은 제 2차 대전 후인 1950년 부터이다.

1950년에 美軍이 日本의 太平洋 연안에 처음으로 精油工場의 조업을 허가한 것이 계기가 되고 있다.

당시의 세계 동향은, 原油와 제품의 수입 비율은, 제 2차 대전 전인 1938년에는 原油 3, 제품 7의 소위 生産地 精製方式이 主流를 이루고

있었으나, 1952년에는 原油 6, 제품 4로 역전되고, 1982년에는 原油가 80% 수준에 이르고 있다. 세계의 大勢로서, 消費地 精製方式이 착실히 발전하고, 정착되고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2. 消費地 精製方式의 長点

그 이유는 당연한 것이지만, 消費地 精製方式의 쪽이 生産地 精製方式이나 중간지 정제 방식에 비해 長点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長点を 보면,

- (1) 대형 탱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탱커運費이 싸게 먹히고,
- (2) 제품의 소비 구조가 계절 변동이나 경기 동향 등에 따른 변화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안정 공급할 수 있으며,
- (3) 生産地 精製를 할 경우, 산유국의 政情 등에 따라 제품 수입이 좌우되고, 불안정해지지만, 자기 나라에서 정제할 경우 그와 같은 걱정이 없고, 안정 공급을 기할 수 있으며,
- (4) 제품 수입이 중심이 될 경우, 제품의 규격이 輸入先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있지만, 消費地 精製에서는 통일된 규격이 될 수 있으며,
- (5) 비상시에 대비하여, 석유의 비축을 각국마다 실시하고 있지만, 제품에 비해 原油의 경우는 대량으로 비축할 수 있고, 가격이 저렴하여 코스트가 절감되며,
- (6) 이 밖에 콤비나트를 형성하기도 하고 해서 관련 산업을 진흥 시키기도 하고, 外貨의 절약이 되는 등, 많은 利点이 있다.

3. 製品輸入 抑制對策

다음으로 日本의 제품 수입 대책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石油業法을 중심으로 関稅 등의 조치로서 대처하고 있지만, 石油業法이 만들어지기까지는, 消費地 精製方法을 유지하기 위해 석유 수입에 外貨를 할당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관세 대책으로서 原·重油에 10%, 揮發油 등 기타 제품에 20%의 基本稅

率을 설정하여 대처해 왔다.

外貨 할당제는 原油를 수입하는 경우에 중점적으로 할당하는 방법을 취해 石油業法이 제정되기까지, 消費地 精製方法을 정착시키는 중요한 방책이 되었다.

Ⅲ. 石油業法의 제정

1. 原油의 外換輸入自由化 對策 = 外貨 할당제 폐지 對策으로서 石油業法 제정

歐美 제국과 IMF 등으로 부터, 日本의 外換관리의 자유화 요구가 강해지면서, 1962년 原油의 換 자유화가 불가피하게 되자, 그 대책으로서 石油業法이 제정되고, 그 후 한번의 개정도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石油業法의 要点

石油業法의 要点은, 다음의 여섯가지의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 (1) 5년간의 石油 공급 계획을 매년 책정할 것.
- (2) 精油業을 하고자 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을 것.
- (3) 上압 증류 설비 등 석유 제품을 생산하는 주요한 설비의 신·증설, 개조를 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을 것.
- (4) 석유 수입업이나 석유 제품의 판매업을 하려면 정부에 신고할 것.
- (5) 석유를 수입하거나 석유 제품을 생산할 경우, 사전에 정부에 신고하고, 또 수급 사정 등에 따라 정부가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으며,
- (6) 석유 제품의 가격이 부당하게 앙등 또는 하락할 염려가 있을 경우, 정부는 표준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3. 法의 運用

가. 供給計劃

이와 같이 石油業法은 石油産業을 광범위하

게 제약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운용에 관해서 설명하면, 우선 法の 기본이 되는 石油供給計劃은, 당해년도를 포함한 5년간에 걸쳐

- 原油의 생산량과 수입량
- 석유 제품별 생산량과 수입량
- 주요 정제 설비 능력
- 기타 중요한 사항

등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다. 금년 5월에 만들어진 1983년도부터 1987년도까지의 공급 계획을 보면, 석유 제품의 공급은 국내 생산을 중심으로 하되, 需給조절을 위해 나프타, 重油를 보완적으로 일부 수입하는 消費地精製方式의 골격으로 되어 있다. 석유 제품의 생산량과 수입량의 비율을 보면, 1983년도는 생산이 91%, 수입 9%였으며, 이것이 1987년도에는 생산 89%, 수입 11%로 제품 수입의 비중이 늘고는 있지만, 앞으로도 消費地精製方式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나. 生産計劃의 申告

다음으로 石油製品的의 需給조정에 관해 설명하면, 石油製品的의 생산 계획과 수입 계획의 신고에 따른 생산량과 수입량이 정부가 정한 공급 계획의 수량과 크게 다를 경우, 정부는 계획 변경을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의 운용은 변경, 권고하기 전에 생산 계획의 수정을 요구해서, 사전에 계획적인 생산을 유도함으로써, 안정 공급하는 방법이 취해지고 있다.

4. 設備許可制 운용의 예시

또, 주요 정제 설비의 신·증설, 개조등에는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고 있지만 이 제도를 이용해서 여러가지 조치가 취해져 왔다.

1960년대의 고도 경제 성장기에 발생한 유황 산화물의 배출 규제를 위해, 重油의 유황 함유율을 일정을 이하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 그 결과, 重油脫黃 설비가 대폭으로 건설되어, 현재 직접 脫黃 방식과 간접 脫黃 방식과를 합하면 하루 147만 배럴의 설비가 있다.

이 능력은 상압 증류 설비의 30%에 해당하는

것이다.

기타, 비축 증강 대책에도 설비의 허가제가 활용되고 있다. 즉, 1962년의 제3차 中東戰爭을 계기로 석유 비축의 필요성이 일층 증대했기 때문에 通産省은 설비 허가에 있어서 60일분의 비축 보유를 조건으로 했다. 이 비축 증강 대책이 그후 石油備蓄法の 제정으로 결부되어 금년 9월말 현재로 民間 95일, 정부 22일의 합계 117일분의 비축을 보유할 수 있는 체제가 되었다.

한편, 제2차 석유 위기 이후의 石油需要의 감퇴에 따라 상압 증류 설비가 과잉 현상을 보임에 따라 공급 계획과 設備許可制를 잘 운용해서 약 100만 배럴/일을 과잉으로 해서 금년 9월말까지 폐기, 휴지 등의 축소 신청을 내게 하여, 그 결과 이미 약 100만 배럴/일이 축소되고 있다.

5. 其他政策

石油政策은 이상 설명한 石油業法을 중심으로 하는 운용외에,

긴급시 대책으로서, 앞에서 설명한 石油備蓄法이 제정되어 있고, 정제·원매·수입 회사에 대해 90일의 비축 의무를 부과시키고 있으며, 이 민간 비축 외에, 국가 비축으로서 3,000만 kl의 비축을 장기적으로 달성하도록 실시하고 있다.

긴급시 대책으로서, 석유 수입의 중단이라는 사태에 대비해, 석유 수급의 정부 통제, 할당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石油需給適正化法도 제정되어 있다.

또 유통 문제 중에, 注油所의 건설 억제에 대해서는, 일찌기 정부에 의한 행정 지도를 시행해 왔지만, 현재는 휘발유 판매업법을 제정해서, 注油所의 등록제, 과당경쟁지역에 있어서 건설 조정 등을 실시하고 있다.

IV. 製品輸入

1. 石油業法の 공급계획으로 수입량 책정

石油製品的의 수입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石油業法에 따라 석유 공급 계획의 책정이나 제품의 수입 계획의 제출 의무와 그의 변경 권고권의 활용을 통해 수입되는 제품과 그 수량을 규제하고 있는데, 동시에 수입업자의 제출 의무와 비축 의무에 따라서 수입 자격자도 실질상 제한하고 있다.

그 결과, 계절적으로 극히 소량 수입되는 것을 제외하고, 나프타와 重油만이 수입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重油의 外換 輸入 自由化 對策

重油의 수입에 대해서는, 1971년도 까지 外國 換 및 外國 무역 관리법에 의해, 輸入 換의 제한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수입량과 수입 자격자의 제한이 행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1972년도에 外換의 자유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石油業法에서는 수입업자나 수입계획도 제출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수입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큰 문제가 되었다. 그것 때문에 官民 모두가 자유화 대책을 검토해서, 결국 關稅 할당제를 새로 설정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關稅 할당제는 특정의 수입자격자가 일정량까지 낮은 관세율로 수입할 수 있어서, 그 수량을 넘어서 수입하는 경우,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서 수입을 규제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낮은 관세율, 즉 1차 稅率이 적용되는 수량은 石油業法에 의거한 석유 공급 계획으로 정한 수량을, 관세 관계의 법령으로 고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 2차 稅率은 1차 稅率에 비해서 용도나 종류에 따라 약 2.4-3.5배의 高率로 설정되어 있어서, 실질상 수입 금지의 세율로 하고 있지만, 그 2차 稅率을 적용해서라도 수입하고자 할 경우, 石油業法의 수입업자나 수입 계획의 제출 등의 규제를 활용해서 실질상 수입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3. 나프타 輸入의 경우

나프타는 石油化學 原料 용을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石油業法 제정 당시인 1960년대 경

부터 국내 생산을 상회하는 나프타 수요의 급증에 따라, 부족분을 제품 수입으로 충족해 왔다.

그 당시의 수입량과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石油化學用에 한해 관세를 대폭으로 감세했기 때문에, 精油會社가 수입을 대행하는 방법이 취해져서 공급 계획의 수입량에 한해 수입하는 방법이 1981년도까지 계속되어 왔다.

V. 消費地 精製 方式 재고의 움직임

1. 나프타 輸入 方式의 再考

그러나, 제 2차 石油危機 당시, OPEC에 의해 여러 차례에 걸친 原油의 가격 인상 공세가 계속되자, 그의 국내제품가격에의 반영에 대해 通産省은 精油會社의 편승 가격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精油會社別로 코스트를 체크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코스트·업을 제품별로 균등한 가격으로 인상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따라서 나프타의 국내 생산 가격은 수입에 비해 높은 비율로 되고, 때 맞춰 石油化學 業界가 대단한 불황이었던 일도 있고 해서, 石油化學 會社는 나프타를 스스로 자유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國產 나프타 가격을 수입에 連動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石油業界는,

- (1) 수입 자유화는 석유가 連產品이기 때문에 다른 석유제품의 안정 공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것.
- (2) 수입 가격은 작은 국제제품 시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으로 原油에 비해 불안정하다는 것.

등의 이유로 맹렬히 반대 했다. 양 업계의 대립은 산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쳐, 석유 제품의 수입 자유화, 石油業法의 재고 움직임으로 발전해 갔다.

이때문에 通産省은, 石油化學用 나프타가 1960년대 부터 수입되고 수입 비율도 계속 증가해서, 1981년도에는 40% 까지 늘어났고, 그 수입이 수급 조절상 필요한 양일 경우, 石油化學用인 나프타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1982년도 부터 일정한 조건하에 실질적으로 수입을 자유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절충안을 양 업계에 제시했다.

그 절충안의 개요는,

- (1) 石油化学会社는 공동으로 수입 회사를 설립하고, 그 공동 회사가 나프타의 수입업자가 될 것.
- (2) 국산 나프타 가격은 매 분기별로 전국 평균 수입가격 실적에 일정의 경비를 더한 가격으로 할 것.

이라는 내용이였다.

石油化学과 石油精製의 양 업계는 절충안을 수락하여, 나프타 수입을 둘러싼 분쟁은 사실상 타결되었다.

절충안에 따라서 1983년도의 수입 비율은 70%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重油의 輸入 自由化, 國産 重油의 국제 가격에 準한 價格

이와 같이 나프타의 수입 자유화는 타결되었으나, 이번에는 重油의 대량 사용에 따라 나프타와 마찬가지로 重油의 수입 자유화와 국내 생산 가격을 국제 가격에 준한 가격으로 인하하라는 요구가 크게 대두 되었다. 특히 重油의 대량 사용은 에너지 多消費型 産業이기도 하고, 原油 價昂등을 배경으로 불확이 심각화되고 있기 때문에, 종래부터의 요구를 1982년 경부터 한층 더 에스카레이트 시켜, 산업계 전체를 몰아 넣을 기세로까지 되어 왔다. 산업계의 요구는 重油의 수입 자유화, 국산 重油의 가격 인하 외에, 重油 등의 産業用 연료를 싸게 하기 위해서, 揮發油, 灯油 등의 民需用을 높게 하는, 소위 석유 제품 가격체계의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消費地 精製方式의 재고의 요구이기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通産省은 올해에 들어와서 심의회 등에 검토를 위임하기도 하고, 또 美国과 유럽 제국에 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석유업계도 日本 石油 連盟에서 금년 봄에, 유럽 제국과 東南 아시아에 조사단을 파견하는 한편, 지난 9월에 장기 에너지수급전망의 작

업을 통해 석유제품의 안정 공급을 위해, 지금까지도 消費地 精製方式을 기본으로 할 것 등 석유 정책에 관해 건의를 했다.

3. 製品輸入 自由化에 관한 석유 業계의 파견

(1) 찬부양론

그러나 제품의 輸入 自由化에 대해서는 석유 업계에서도 반드시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극히 소수 이기는 하지만, 제품의 수출입 자유화에 찬성하고 있는 곳도 있다. 그래서 석유 업계에 있어서 찬부 양론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기로 하겠다.

(2) 讚成論

극히 소수이지만, 찬성론의 논거에서 보면, 첫번째는 石油産業이 정부의 통제에 의해서 경쟁이 격화되고, 그 결과 低收益産業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통제를 폐지하고, 경영 환경을 개선해서 강한 기업체질을 갖는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즉, 1962년에 石油業法이 제정되어 그 당시 精油 会社는 16개 회사였던 것이, 20년 후인 현재는 29개 회사로 증가해서, 경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으며, 또 정부의 수급 조정은 공급 안정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황 대책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해서 통제를 폐지하여 기업의 자연 도태를 촉진시켜, 장기적으로 경영 환경의 개선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번째는 나프타와 重油의 수입을 자유화 해서 국내 생산 가격도 수입 가격에 준해 인하시키고, 반대로 揮發油, 灯油 등의 民需用을 인상하는 가격 체계의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수요자의 요구이기도 하고, 또 불가피한 시대적 추세이기 때문에, 수입품에 대항할 수 있는 기업체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번째는, 이러한 기업의 노력에 의해서, 消費地 精製方式이 경제성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消費地 精製方式을 유지하기 위해 시대에 역행하여 여러가지의 규제를 가하는 것은 本末이 전도된 것이라고 하는 의견이다.

기타, 설비의 과잉 대책의 일환으로서 제품 수출의 자유화를 추진하되, 수출 자유화와와의 균형상 수입도 자유화시켜야 한다고 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3) 反對論

이에 대한 업계의 일반적인 의견은 제품 수입의 자유화는 반대이며, 앞으로도 계속 消費地 精製方式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제품 수입의 자유화는 連產品인 석유 제품의 안정 공급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국제 제품 시장은 양적으로 크지 않고, 따라서 日本이 대량 수입으로 나설 경우, 가격이 폭등할 우려가 많아 안정적이지 아니라는 점이다.

세째는, 산유국의 수출용 精油工場과의 관계로 제품 수입을 자유화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즉, 현재 계획되고 있는 산유국의 정유공장 건설은 주로 自國의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며, 순수하게 제품 수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뿐이며, 수출 압력은 작다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 또 산유국의 수출용 정유공장은 본래 정제·판매 단계의 이익까지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된 것이므로, 국제 가격을 하회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으며, 가령 싸게 판매한다고 하면 原油의 가격 인하에 연계되어 자기의 목을 조르게 될지도 모른다.

그 밖에 소비국의 석유 수요의 감퇴와 가격의 안정으로 제품 수출 이익을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제품 수출을 추진할 환경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기타 원유 수급은 나중에도 장기적으로 안정이 전망되기 때문에 산유국의 제정이 곤란한 현재의 상황에서 정유공장 건설

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이며, 원유 수급 상황으로 볼 때 原油와 제품을 끼운 수출을 강제할 상황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네째는, 국내 생산하는 제품 가격을 국제 가격에 준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제 비교 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에서 넌센스라고 하고 있다. 국제 비교할 경우, 예컨대 통화의 구매력이라든가 稅制, 国情 등의 차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또 에너지의 自給度라든가 석유 제품의 수요 구성 혹은 商價習의 상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등의 문제가 있고,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 생각이다.

다섯째는, 重油를 내리고 揮發油 등 民需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제품 가격 체계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가격 인하는 간단하지만 인상하는 것은, 競合燃料과의 관계가 있고, 그의 경합 연료와의 경쟁 기반이 정책적으로 불공평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의 개선이 先決되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다.

즉, 灯油 등의 中間溜分은 LNG를 원료로 하는 都市 가스 등도 경합하고 있지만, 石油에는 90일의 비축 의무가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코스트·업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石油은 관세나 소비세가 과세되어서, 또 다시 이것들을 재원으로 LNG 등에 정부가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石油은 三重의 부담 증가를 강요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石油과 경합 연료와의 경쟁 기반에 격차를 남겨 둔 채 석유만 가격을 인상하면, 석유의 수요는 도시 가스 등으로 전환하게 되므로 제품 가격의 개선에는 석유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경감하고 경쟁 조건을 같게 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하는 생각이다.

VI. 앞으로의 石油政策方向

1. 石油業界의 견해

이와 같이 제품 수입의 자유화, 消費地 精製方式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는 석유 업계 내부에서도 양론이 있다.

그러나 石油連盟에서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9월에 앞으로의 석유 정책에 관해 통일된 의견을 집약했는데 그 추진방향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消費地 精製方式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石油連盟의 견해는,

- (1) 세계의 석유 거래가 현재 原油 80%, 製品 20%로 압도적으로 原油가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 즉 소비지 정제 방식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
- (2) 석유 제품 시장은 原油 시장에 비해 적을 뿐만 아니라, 가격·수량면에서도 변동이 심하여 안정 공급원이 되기 어렵다는 점.
- (3) 제품 수입 보다도, 原油를 수입해서 그 나라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消費地 精製方式의 쪽이, 탱커의 대형화에 의한 利点도 받아들일 수 있고, 가격·수량 양면에서 안정적이라는 점.
- (4) 原油에 의한 비축쪽이 코스트도 싸고, 또 국내 수요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며, 긴급시 대책을 포함, 석유 제품 전반에 걸쳐 안정 공급과 국민 경제적인 면에서도 利点이크다는 등의 이유로 금후에도 석유의 공급체제는 소비지 정제 방식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2. 政府의 견해

한편, 通産省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심의회에서 소비지 정제 방식을 포함, 금후의 석유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내년 봄경까지는 정책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의 검토 과정은

소비지 정제방식의 바람직한 자세, 석유업법, 휘발유 판매업법의 바람직한 방향등이 중심으로 되어서 이것들의 검토를 통해서, 벌써부터의 현안인 29개 精油会社, 13개 元売회사를 재편성하고, 집약화 해가기 위한 유도책이 제안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검토를 막 시작한 현 시점에서 금후의 바람직한 방향을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석유업계나 정부 등 내외의 움직임으로 봐서 대담하게 미루어 살펴 본다면, 다음과 같은 생각으로 되지 않을까 한다.

- (1) 석유 제품의 안정 공급, 석유산업의 혼란 방지 등의 관점에서 앞으로도 소비지 정제 방식을 기본으로 하는 방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 (2) 그러나 나프타에 뒤이어, 重油의 수입량도 서서히 증가시켜 또 중유의 국내 생산 가격의 수입에의 連動을 조금씩 유도해 갈 것이라고 생각된다.
- (3) 따라서 석유 제품 수요의 輕質化, 국내 생산 중유의 과잉화 대책 등의 견지에서 현재도 진행시키고 있는 重油의 분해설비의 건설 촉진을 위해, 정부는 低利 융자나 稅制上的 우대 조치등의 지원 조치를 한층 강화해 갈 것이라고 생각되며, 또 정제·원매회사의 집약화의 추진을 유도해 갈 것이라고 생각된다.
- (4) 석유업법의 개정에 대해서는 소비지 정제방식을 기본으로 하는 방향이 변하지 않는 이상, 당분간 현행법 그대로 하고, 제품수입의 증가 등을 포함해서 운용의 탄력화에 따라 대처해 갈 것이라고 생각된다*

